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31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이원욱·김수흥·김철민

송옥주 · 안호영 · 양정숙

윤준병 • 이용빈 • 전혜숙

정필모・최종윤・허 영

홍성국 · 홍익표 의원

(14인)

제안이유

수소경제는 변동성이 많은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음.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에서 수소경제에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 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 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제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청정수소·청정수소발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 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 라.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마. 청정수소의 생산업자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 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 바.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인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신설).
- 아.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 자.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도록 하며, 청정

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 차. 판매·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 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함(안 제25조의9 신 설).
- 카.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4호의2 신설).
-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함(안 제59조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청정수소"란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 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서 제25조의3에 따른 인증을 받 은 수소를 말한다.
- 11. "청정수소발전"이란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육성 및"을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제4장의2(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청정수소인증 및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 제25조의2(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 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청 정수소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청정수소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청정수소 제조설비가 계속하여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수소의 청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의3(청정수소인증 등) 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판매하려는 자(이하 "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생산업자등은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소의 청정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 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청정수소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청정수소인증기 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생산업자등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청정수소를 구매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량과 구매자에 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의 취소 등) ①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경우
- 2. 청정수소판매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 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5.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의 취소, 청정수소만증명서의 발급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의5(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청정수소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청정수소인증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청정수소인증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증 업무를 한 경우
-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증의 기록을 작성·보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한 경우
- 7.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한 경우
-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청정수소인 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청정수 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 제25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7(청정수소의 판매·사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판매·사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 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판매·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5조의8(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청정수소의무구매자"라 한다)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공급하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전력량(이하 "의무구매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의무구매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 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본계획
 -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3. 청정수소발전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 등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무구매량을 정하는 경우

- 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의9(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판매·사용의무자 및 청 정수소구매의무자가 의무판매·사용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 수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 1. 판매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 청정수소구매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

제5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
- 2.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인증을 한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자
- 4.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증을 한자
- 6. 제2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발급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인 증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0. "청정수소"란 수소의 생산</u>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
	출하는 수소로서 제25조의3에
	따른 인증을 받은 수소를 말
	<u>한다.</u>
<u><신 설></u>	11. "청정수소발전"이란 청정수
	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u>것을 말한다.</u>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
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	업자의 책무) ①
자치단체는 수소산업 <u>육성 및</u>	<u>육성, 청</u>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	<u>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u> -
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 8. (생략)

③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6의2. 청정수소의 개발·생산·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청정수소인증 및 청정

수소발전 구매의무

제25조의2(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수소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하 "청정수소인 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②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청정수소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 이 등 대통령이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한 기록 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청정수소 제조설비가계속하여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하여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수소의 청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3(청정수소인증 등) 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판매
하려는 자(이하 "생산업자등"이
라 한다)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
소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u><신 설></u>

한다.

② 생산업자등은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다만, 수소의 청정성과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 한 경우 청정수소인증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청정수소인증기준을 적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할 수 있 다.

④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제3항 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당 생산업자등에게 부당한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 니 된다.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

- ⑤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를 구매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량과 구매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의 취소 등) ①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청 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청정수소민증명서의 발급금지명령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u><신 설></u>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을 받은경우
- 2. 청정수소판매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 급한 경우
-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정 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 4.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5.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청정수소판매 증명서의 발급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제1항

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의 취소,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 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 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인증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청정수소인증 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청정수소인증의 방법·절차

- 등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증 업무를 한 경우
-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 6. 제2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증의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기록을 작성 · 보관한 경우
- 7.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청 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증을 한 경우
-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처 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청정 수소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 내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에

<신 설>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5제 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청정수소의 판매·사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

급시설의 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판매·사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판매·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사용의무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8(청정수소발전 구매의 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청정수소의무구

매자"라 한다)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기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전력량(이하 "의무구매량"이라 한다)의합계는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의무구매량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 여 연도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 1. 기본계획
-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 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3. 청정수소발전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청정수소발전 구매 의무 등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

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의무구매량을 정하 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9(과징금)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판매·사용의무자 및 청정수소구매의무자가 의무 판매·사용량 또는 의무구매량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 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략)

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 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 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 1. 판매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과 징금 및 가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 따 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
- 2. 청정수소구매의무자에게 징 수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 산업기반기금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 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생략)

제59조(벌칙) ① 제36조제1항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 느 하나에 해당하는-----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4의2.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 원

5. (현행과 같음)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 지 정을 받은 자
- 2.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 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인 증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자
- 4.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인 증을 한 자
- 6. 제2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발급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②·③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 설></u>

2. ~ 6. (생략)

②·③ (생 략)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 사업을 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 소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 수소인증을 사용한 자

- 2. ~ 6.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